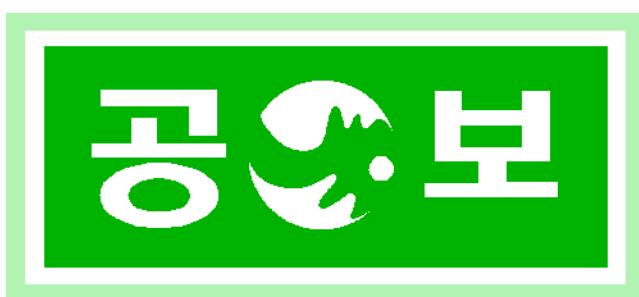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판 의 장



제 687 호 2011. 4. 11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30호[하천 점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SK에너지)] 2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31호[하천 점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주경동도시가스)] 3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237호[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] 4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239호[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 공고] 5

회 람								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 30호

고 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·사용 허가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SK에너지 대표 빅봉군				
주 소	서울 송도구 서현동 99번지				
점용위치	한성로 127-7-1 한성로 1284-7 송정로 1110 총평동 1207-10 청평동 1207-9 총평동 1208-2 승정로 366-3 한강로 1294-7 총평로 1207-1 숙동로 949 강화동 1207-4	히 천 명	총 평 천		
전용목적	보유관 이설(12인치, L=128m)	면 적	구 로 개	인 시 영 구	
	전용면적 (m ²)		지방아천 940.06	881.2	58.86
점용기간	일 시 : 2011. 02. 24. ~ 2011. 05. 31. 5 년 : 2011. 02. 24. ~ 2015. 12. 31.				

울산광역시복고시 제2011- 31호

고 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은 규정에 의거 하·천 점·사용
하기 및 실시·확인하기하고 하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(주)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신장동 939번지		
점용위치	증권동 1209-2호시 정동동 1284-41호 층정동 649번지 5층, 655 3층 층정동 1110번지	하 현 명	장명천
점용목적	도시가스관 이설(D30C, L=34m)	점용면적 (㎡)	구 분 계 일시 영구 지방하천 275.4 265.2 10.2
점용기간	월 : 2011. 4. 1. ~ 2011. 5. 31. 년 : 2011. 4. 1. ~ 2015. 12. 31.		

[별지 제11호서식]

공고 제 2011-237호

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

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(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·사용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

상호 및 명칭	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		
시행(점용·사용)자	<u>태 표 지</u> 죄정준 주 소. 울산 북구 양시로 399 1번지		
소하천명	당사천		
위치	남사동 729번지		
면적	영구: 12㎡ 폐진부지예상면적 m ²		
공사(점용·사용)개요	일시 : 2011. 3. 21. ~ 2012. 1. 31. 영구 : 2012. 2. 1. ~ 영구		
목적 및 사유	건축물 전출입		
설계도면 : 1부			

21302-111111호

210mm×297mm

95.5.11 승인

(한좌용지(2평) 60g/m²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세2011-239호

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 공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□ 근거규정 : 「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28조,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

□ 위탁기간 : 2011. 5. 1. ~ 2013. 4. 30.

□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

-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옥외광고업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
그 후의 인력 및 시설·장비 등을 갖춘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
법인 또는 단체
- 「국가자격기술법」에 따른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
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명 이상
 - 33평미터 이상의 사무실
 - 작업차량, 사디리,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
 - 손해배상 책임배상 등 보험가입(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·단체에 해당)

□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 : 2011. 4. 11.~4. 18. (1주간)
- 신청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
- 신청서류
 - 현수막지정계시대 위트·관리 지정 신청서
 - 옥외광고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사업계획서
 -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(자격증 사본)
 -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
 - 징비보유현황 등 그 증빙서류

□ 수탁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

-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리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리능력이 있는업체 우선 선정
- 위탁업체는 1개 업체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북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

□ 수탁자의 임무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수탁자는 현수막 표시신고의 접수·처리 및 계시대에 신고된 현수막을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현수막 표시 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(도로점용료 포함) 및 민원시류 접수를 담당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지정계시대의 청결유지 및 진재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개시된 현수막의 관리 및 신고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미신고된 불법현수막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□ 기타사항

-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(☎219-7482)로 문의

제 호

처리기간

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지정 신청서

30일

신청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- (-)
	③ 업소명 (부인단체명)		
	④ 주 소		
	⑤ 영업장 소재지	⑥ 전 화 번 호	

「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28조 1'정에 의하여
위와 같이 현수막지정계시대 민간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¶

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규칙

※ 구비자료	수 수 봉	
	1. 옥외광고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	접수
	2. 사업계획서(대행수수료 예상수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 포함) 1부	
	3.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(자격증 사본) 1부	
	4.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	
	5. 장비보유 현황 등 그 증빙서류 사본 1부	